

선	기관의 장
람	



제 696 호

2006년 6월 23일 금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09호(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10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 5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11호(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8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12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10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13호(인천광역시남동구기금및통합기금관리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1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14호(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18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15호(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 21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16호(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24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17호(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 27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18호(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 30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19호(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32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20호(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 36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752호(공사전자입찰공고(긴급)[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소3-7호선외6개소도로개설공사]) 3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759호(인천광역시남동구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규칙폐지규칙(안)입법예고) 4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761호(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에정지(변경)지정공고) 5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766호(차량초과에따른자동차말소등록예고) 5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767호(남촌동175-2번지일원도로공사공사명정정공고) .. 5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768호(은행차정밀검사와태료부과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56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6-27호(재건축정비사업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 59

회								
람								

조 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6년 6월 2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809 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인천
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4.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승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주식백지신탁제 시행('05.11.19)에 따른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및 제146회 남동구의회에서 원안의결, 시 사전보고에 따른 이견이 없으므로 이에 공포하고자함

□ 주요내용

-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신탁계약 체결 후 당초 신탁된 주식을 60일 이내 처분이 어려울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기간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신설(안 제3조제1항제4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6월 2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810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각 국장, 기획감사실장, 경영재정과장 및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시민단체 대표,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재정공시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 제안이유

-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재정운영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 기존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및 제146회 남동구의회에서 원안의결, 시 사전보고에 따른 이견이 없으므로 이에 공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안 제2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기획감사실장, 경영재정과장,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위원회 운영(안 제3조)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심의 및 공시방법과 시기의 결정, 특수공시 사항 선정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회의(안 제4조)
공시심의위원회 회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6월 2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811 호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2005. 8. 4) 및 같은 법 시행령(2005.12.30) 개정으로 근거법령의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및 제146회 남동구의회에서 원안의결, 시 사전보고에 따른 이견이 없으므로 이에 공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 (안 제1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6월 2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812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으로 하고,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

동조 제3항 중 “담당관, 전문분야교수 및”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수 이상의 대학교원”으로 하고, “위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중 “출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의 개정(2005. 8. 4)으로 근거법령 조문을 변경하고
-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객관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및 제146회 남동구의회에서 원안의결, 시 사전보고에 따른 이견이 없으므로 이에 공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간위원의 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을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조제1항)
- 위원 궐위 시 위촉사항과 잔여 임기기간을 규정함(안 4조제2항)
- 위원장의 표결권과 의결정족수 규정함(안 제6조제4항)
-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 위촉위원으로 명시하고 지급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기금및통합기금관리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6월 2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813 호

인천광역시남동구기금및통합기금관리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기금및통합기금관리설치·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명 “인천광역시남동구기금및통합기금관리설치·운용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110
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하며, “통합기금관리”를
“통합관리기금”으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를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구’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를 “구”로 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
다.

제4조제2항중 “통합기금”을 “통합관리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실,국장으로 한다”를 “실·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기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 설치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동조제2항제2호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을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으로 한다.

제8조제3항중 “기금운용계획서를”을 “기금운용계획안을”로 하고,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기금운용관은”을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의”로 하고, “변경할 수 있다”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동조제2항중 “2분의 1을 초과하는 변경사항 또는 새로이 목을 신설하는 변경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동조제3항중 “지출금액에”를 “기금운용계획의”로 “기금결산시”를 “기금의 결산보고서에”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통합기금의 예탁”을 “통합기금에의 예탁”으로 하고, 후단의 “통합기금관리(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를 “통합기금”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통합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통합기금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통합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합기금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1항중 “통합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합기금위원회”로 한다.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위원회”를 “통합기금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4항중 “통합기금운용계획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통합기금운용계획안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제22조중 “지방재정법 제29조”를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 금 설 치 조 례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안이유

- 지방기금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법되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임의사항이었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심의사항의 규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결사항 등 기금 관리·운용 및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및 제146회 남동구의회에서 원안의결, 시 사전보고에 따른 이견이 없으므로 이에 공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운용관을 소관 실,국장에서 실·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기금의 담당으로 하여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안 제5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 심의 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함(안 제7조)
-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8조)
- 지출금액 변경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변경(안 제10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6월 2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814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중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이하‘의회’라 한다)”를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로 한다.

제2조(정의) 제1호 내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무”라 함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한 회기 중 본

회의 또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위원회조례'에 의한 위원회 및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수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15조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한다.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중 "법무업무담당"을 "의회업무담당"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장애, 상해, 질병을 말한다)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06.2.8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의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어 개정 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및 제146회 남동구의회에서 원안의결, 시 사전 보고에 따른 이견이 없으므로 이에 공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자치법규 입법형식에 맞춰 약칭사용 표기를 변경(안 제1조)
- ‘의정활동비’ 용어의 정의(안 제2조제2호)
-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의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안 제4조)
- 심의회의 간사를 ‘의회업무담당’으로 변경(안 제14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6월 2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815 호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중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를 삭제하고, 제3조 내지 제9조를 각각 제2조 내지 제8조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1항제1호 중 “유공장학생은”을 삭제하고, 동항 제2호 중 “특기장학생은”을 삭제한다.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학비를 면제받는 등 이와 유사한 혜택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선발)의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생활이 어려운 통장(재산세 연 납부액이 60,000원 미만인 자) 동조제2항 중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을 삭제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장학금은 분기별 또는 학교에서 정하는 공납금의 징수시기에 맞추어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제1항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05.9.29공포·시행) 등 관련법령의 개정 및 교육행정 등의 변화에 따라 내용에 맞게 본 조례를 변경하여
-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 진작 및 효율적인 동행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 제14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 되었으며, 시 사전보고 및 부서에서의 이견이 없으므로 이에 공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학생의 대상에서 의무교육대상인 중학생 제외(안 제1조, 제4조)
- 장학생의 종류 삭제(안 제2조)
-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추가(안 제8조제1항제4호)
-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정하는 사항 신설(안 제9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6월 2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816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이하“구청”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으로 한다.

제2조 중 “구청”을 “인천광역시남동구청”으로 하고, 동조의 [별표] 중 구월2동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4-1”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3-1”로 한다.

부 칙

-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개정)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제2항 관련 [별표3] 동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중 구월2동 위치란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4-1”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3-1”로 한다.

〔별표〕 (제2조 관련)

구청 및 동소재지

구 분	소 재 지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8
구월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14-5
구월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23-1
구월3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98-7
구월4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96-6
간석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53-4
간석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06-6
간석3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9-1
간석4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75-17
만수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83-5
만수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69-14
만수3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47-1
만수4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21
만수5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76
만수6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20
장수서창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3BL-2LT
남촌도림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54-1
논현고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12-7

□ 제안이유

- 구월2동 동청사 신축·이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및 제146회 남동구의회에서 원안의결, 시 사전보고에 따른 이견이 없으므로 이에 공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2조(소재지) 관련 별표중 구월2동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4-1”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3-1”로 함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6월 2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81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및 동조제2항 단서중 “「임대주택법」 제12조”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2조중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토지·지상 건축물·주택”으로 한다.

제19조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를 “창고용으로”로 한다.

제21조제1호 후단 중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5 내지 제2호의7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안이유

- 법령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 부터 시달됨에 따라 내용에 맞게 감면 조례를 정비하여 구세감 면에 대한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및 제146회 남동구의회에서 원안의결, 시 사전보고에 따른 이견이 없으므로 이에 공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감면 규정 삭제(안 제9조)
-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10조)
-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화를 위해 감면대상을 토지·지상 건축물·주택으로 조문 수정(안 제12조)
-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대상 토지 중 화물터미널로 사용되는 토지 삭제(안 제19조)
-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 추가(안 제2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2호의5 내지 제2호의7”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6월 2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818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9조의2(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①구청장은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채납자(시·도세 및 시·군·구세를 합한 지방세 채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의3 제2항제3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등 관련 법령 내용에 맞게 구세조례를 정비하여 구세부과징수사무를 적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및 제146회 남동구의회에서 원안의결, 시 사전보고에 따른 이견이 없으므로 이에 공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억원 이상의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안 제9조의2)
-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 삭제(안 제24조)
- 지방세법 개정예 따라 주택분 재산세 납기 조정(안 제26조의3)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6월 2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819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로 한다.

제 2 장 중 “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제1항 중 “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동조 제3항 중 “사회경제국장”을 “기금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제5항중 “사회복지과장”을 “기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16조(장학생의 선발) 제2호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를 “선발한다”로 한다.

제28조(회계공무원)제2항 중 “사회경제국장으로 하고, 분임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를 “기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로 하고, “사회복지담당”은 “기금 관련 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

동조 제3항 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회계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9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으로 하고, 제2항 중 후단의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동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장·관·항)지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세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

④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동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항 내지 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및 운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05.8.4 공포, ‘06.1.1 시행됨에 따라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 제14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 되었으며, 시 사전보고 및 부서에서의 이견이 없으므로 이에 공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6조제1항)
- 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추가(안 제9조제3호)
- 장학생 선발시 선정하는 방법 변경(안 제16조제2호)
-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안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 할 수 있는 사항 신설(안 제29조제3항)
-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을 신설(안 제29조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6월 2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820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중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 5~8명”을 “의회운영위원회 5~7명”으로 하고, 제2호 “총무위원회 8명”을 “총무위원회 6명”으로 하고, 제3호 “사회도시위원회 8명”을 “사회도시위원회 7명”으로 한다.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중 제2항 제3호 가목중 “사회경제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한다.

제7조 (특별위원회)중 제3항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를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 공직선거법의 개정(2005. 8. 4)으로 남동구의회의 의원정수가 17명에서 14명으로 감소되고,
- 지방자치법(2006. 4. 28)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2006. 6. 13)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위원회조례 중 관련 조항을 조정코자 하는 안으로
- 남동구의회의의원 발의 안으로 제147회 남동구의회에서 원안의결, 시 사전보고에 따른 이견이 없으므로 이에 공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안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 해당국 명칭변경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조정
(안 제3조제2항제3호 가목)
-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안 제7조제3항)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752호

(G2B공고)20060612378-00

공사 전자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공 사 명 :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소3-7호선외 6개소 도로개설공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789번지일원(구획정리사업지구내)
다. 공사개요 : 도로 7개 노선 L = 258.2m, B=2~6m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마. 총공사비 : 금139,798,000원
(추정가격 117,536,364원 + 부가가치세 11,753,636원 + 관급자재10,508,000원)
바. 기초금액 : 금129,290,000원(금일억이천구백이십구만원정)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06. 06. 20(월) 09:00 ~ 2006. 06. 26(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06. 06. 26(월) 14:00**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입찰집행관 PC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를 이용
하여 제출하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추정가격 2
억원 미만의 경쟁 입찰공사 평가 기준 적용)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의
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5조 규정에의한 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면허를 소유하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영업소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로서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집행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pm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천한(2개씩 선택)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자부예규 제182호)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제183호)이 적용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기타 공사 설계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과 도시개발팀(☎ 453-2985), 계약에 관한 사항은 도시행정팀(☎ 453-2953), 전자입찰 이용 방법등에 관한사항은 조달청 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6 . 19 .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75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6. 2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규 칙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폐지 규칙(안)

2. 폐지취지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중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부분이 2006. 5. 15부로 폐지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 본문 ” 참조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6년 7월 1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453-2330 / FAX 453-23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6년 6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온정적인 측면과 국비지원 유도 등의 목적으로 안전사고의 경우도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처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 인명피해 발생시마다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 요인과 심의위원회에서 의결 되어야 NDMS(국가재난 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어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중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부분이 2006. 5. 15부로 폐지됨에 따라,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연재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은 이를 폐지하고자 함

□ 본 문 : " 별첨 "

□ 참고사항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2006. 5. 15)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2006. 5.

중 앙 재 난 안 전 대 책 본 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개선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정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란 우리나라 영토에서 태풍, 홍수, 호우, 폭설, 강풍, 풍랑 또는 해일, 지진, 낙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정의 해석을 위한 용어 해설

○ 우리나라 영토의 범위

-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 우리나라의 행정력이 미치는 연근해 해상

【제 외 예 시】

- ◇ 우리나라 선박이 인도양에서 조업중 태풍에 의해 침몰한 경우
- ◇ 자연현상에 의한 비행기 사고

○ 본인의 귀책사유 범위

- 피해자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경우

피해자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경우란 일반적으로

- 강풍, 풍랑, 태풍, 호우, 대설, 해일, 파랑에 관한 기상 특보발령기준에 미달되거나
- 하천인 경우 강우로 인하여 피해지점의 수위가 경계수위 이하인 때

- 경계 수위가 지정되지 않은 하천에서 피해당시의 수위가 최대통수 가능 유량의 1/2미만인 경우
- 12시간 강우량이 80mm 미만인 때
- 시우량이 30mm 이하인 때
-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이 3시간 미만 지속되거나, 파고가 3m 미만인 때
-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에 미달된 경우를 말하나 위의 경우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자연재난 임이 명약관화 할 때에는 이를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본다.

-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로서 예방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나 태만에 의한 피해를 당한 경우
- 강우, 강설, 안개 등 기상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선박, 비행기 사고 등 교통관련 피해
- 경찰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안전사고 등의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피해제외 예시】

- ◇ 악기상이 예상되어 공원 관리인이 등산포기를 권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행동하다 피해를 당한 경우 등
- ◇ 행정청 등으로부터 위험지역으로 판단되어 퇴거 또는 대피권고 지시가 있었으나 이를 불응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
- ◇ 하천 바닥이나 세월교(잠수교)에서 야영중 불어난 물에 의해 사망, 실종된 경우
- ◇ 선박의 입·출항이 통제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출항하여 입은 피해 등
- ◇ 물에 잠긴 도로나 교량으로 무리하게 차를 몰고 가거나 걸어가다 급류에 사망, 실종된 경우
- ◇ 불어난 하천 물 구경을 하거나 낚시 등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린 경우
- ◇ 위험요인이 있는 가운데 농작물 관리를 위해 나갔다가 본인의 실수로 급류에 휩쓸린 경우

○ 직 · 간접적인 자연현상의 범위

- 홍수, 호우, 폭설,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 자연현상이 1차적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통상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간접적인 현황

【간접적인 현상으로 발생한 인명피해 예시】

- ◇ 벼락이 나뭇가지를 절단하여 쓰러지는 나뭇가지가 차에 가해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 태풍 등 자연현상으로 늘어진 송전선에 감전사한 경우

○ 결국 사망, 실종,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 결국 사망, 실종,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란 복구계획 수립 시점에서의 상태를 말하며 실종이란 자연재해에 의해 행방 불명되어 복구계획수립 이전에 타인과의 접촉이나 연락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단, 실종의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복구계획수립을 위한 해석이며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적 권리나 의무를 위한 해석이 되어서는 안된다.

【결국 사망한 경우의 예시】

- ◇ 산사태로 부상하여 흙더미 속에 매몰되었다가 구조작업중 사망한 경우 → 사망
- ◇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자가 치료도중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 사망
- ◇ 하천 급류에 실종되었다가 사체가 발견된 경우 → 사망

□ 인명피해 처리 세부지침

- 인명피해 보고 : 발생즉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거 즉보
 - 보고계통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 대한 보고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보고와 동시 이행
 -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NDMS 인명피해 입력 즉시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 한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구에 재입력 지시 등 이행
-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아닌 경우일지라도 그 사유를 명기하여 NDMS 인명피해 해당 입력란에 즉시 입력
- 외국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 통계에는 포함시키나 복구 계획 수립에서는 제외
- 피해발생 시도에서는 사망,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파악 주소지의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즉시 FAX 등으로 통보
- 선원인 경우 선주나 선박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폐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2005. 12. 23 규칙 제 65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난 인명피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남동구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라 함은 남동구 관할구역에서 태풍·홍수·호우·폭설·강풍·풍랑·지진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직·간접적인 원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 가. 태풍·홍수·호우·폭설·강풍·풍랑·지진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 나. 자연현상이 1차적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통상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현상
3. "사망·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라 함은 복구계획 수립시점에서의 상태를 말하며, 실종이란 자연재해에 의해 행방불명되어 복구계획수립 이전에 타인과의 접촉이나 연락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단, 실종의 경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복구계획수립을 위한 해석이며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적 권리나 의무를 위한 해석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4. " 본인의 귀책사유 " 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 가. 피해자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의무 또는 책임을 다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경우
- 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로서 예방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나 태만에 의한 피해를 당한 경우
- 다. 강우 · 강설 · 안개 등 기상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 선박 · 비행기 사고 등 교통관련 피해
- 라. 경찰 등 관련기관에서 안전사고 등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피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원인 규명
- 2.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 심의 · 조정
- 3. 복구계획 수립시 자문
-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자연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관할 경찰서 · 소방서의 과장급 이상 직원, 재난방재 관련 전문가, 의사, 또는 민간단체 임원중에서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 2. 기타 사회적으로 저명한 식견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제5조(임기 등) ①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중 결원발생시 충원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구청장은 위원이 임기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6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자연재난 피해 최종집계전(피해의 원인이 되는 자연현상 종료후 사유시설은 14일, 공공시설은 7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자연재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원인, 피해당시 기상특보내용, 경찰서 등의 조사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위원회 소관

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의결사항 등을 기록·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참고인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 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6 - 761 호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변경) 지정 공고

1. 2006. 6.21일 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변경인가 되었기에 동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변경 지정 공고합니다.
2. 본 공고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에게 변경된 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며, 종전의 토지 및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3.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에 따른 환지예정지의 사용은 대지정지공사의 완료 및 사업시행상의 장애요인이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부여(환지예정지 사용허가) 합니다.
4. 환지예정지에 대한 관련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계획과(☎453-2982)에 비치하고 환지예정지증명원은 민원지적과에서 발급합니다.
5. 환지예정지(변경) 지정내용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되나 미수령되는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6년 6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766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06. 07. 07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6. 06. 23 ~ 2006. 07. 07 (15일간)

2. 대상 자동차

신청대상차량			이해관계내용	이해관계인	송 달 지
자 동 차 등록번호	성명	사용본거지			
인천30로1524	김병노	남동구 만수동 1086-1 이삭(아) 102-1801호	인천지방법원 (99카단6392)	권형렬	남구 주안동 23-4번지 301호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등록팀(☎453-2932)

2006. 06.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767호

남촌동175-2번지일원도로공사공사명정정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695(2006.6.16)호로 게재한 도로공사명을 『남촌동175-2번지일원도로개설공사』를 『남촌동172-5번지일원도로개설공사』로 정정 공고합니다.

2006. 6.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768호

운행차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과태료부과)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 불가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6. 6. 23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06. 6. 23 ~ 2006. 7. 7
2. 의견제출기간 : 2006. 7. 21일까지.
3. 송달내역 : 최정순(인천4러8434) 등 41건(별첨 명단 참조)
4. 기타 : 의견제출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환경위생과
(☎ 032-453-2655) 끝.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테료부와 사전통지 공시승달(2006.3.21~2006.4.20)

순번	등록번호	소유자명	주소(소유자)	금액	비고
1	인천4라8434	최정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1번지 80호 3통 5반	300000	
2	인천3라5142	(주)녹산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54번지 7호	300000	
3	인천31라4008	성원산업종합건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6번지 1호 대진빌딩202호	300000	
4	인천70라9138	(주)은성강건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5번지감산빌딩 104	300000	
5	인천4라8381	(주)금양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69번지 7호	300000	
6	인천30구1180	쌍림종합주택관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68번지 3호 화남빌딩3층	300000	
7	인천35라9718	박경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57번지 7호 7통 6반 대우빌라 A동 802호	300000	
8	인천35가8560	박희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93번지 21통 4반 트윈빌 8동 201호	300000	
9	인천32라7902	조창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25번지 11호 9통 2반 영진맨션 102호	300000	
10	인천34마1112	박이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20번지 26통 2반 주공아파트 618동 102호	300000	
11	인천30모5064	김부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62번지 2호 15통 4반 이화다세대주택 가동 지하 1호	300000	
12	인천30리7992	(주)성수전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현동 434번지 10호	300000	
13	인천4마5184	이덕기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281번지 13통 2반	300000	
14	인천32나7503	신건창산업(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20번지풍림1차상가	300000	
15	인천70디7968	김정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60번지 5호 17통 2반 동아아파트 3동 1303호	300000	
16	인천70라8315	하이넷정보통신(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19번지대웅빌딩3층	300000	
17	인천80미9065	한국배셀(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08번지 1호 남동공단 137블럭 2롯데	300000	
18	인천3도6578	김한형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83번지 33호 23통 3반 호마을 나동 401호	300000	
19	인천30마9612	(주)윌트엔지니어링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59번지 1호	300000	
20	인천80리1604	웅골식품(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22번지남동공단 151블럭 6롯데	300000	
21	인천31나9954	보영전기(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27번지 15호	300000	
22	인천80나8241	(주)이에스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01번지 153호 3층	20000	
23	인천82나1325	부영테크(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58번지 7호 남동공단 108블럭 7롯데	300000	
24	인천31마1433	(주)비아텍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8번지 10호 남동공단 161-10	300000	
25	인천4라1950	(주)세화산업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27번지 11호	300000	
26	인천32가8211	(주)제일에프에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81번지 16호 남동공단 81블럭17롯데	300000	

순번	등록번호	소유자명	주소(소유자)	금액	비고
27	인천35나1012	고광돈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40번지 6호 4동 1반	300000	
28	인천80미9948	태인건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01번지 32호	300000	
29	인천72나5129	(주)아이.엔.지코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2번지 1호 남동상공빌딩 204호	300000	
30	인천31가5611	설원전자(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현동 439번지 5호	300000	
31	인천70나1201	우석목재(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현동 301번지 1호	300000	
32	인천33라1865	(주)로알컴퓨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16번지 4호	300000	
33	인천31구3918	민유숙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735번지 6호 7동 5반 세명빌라 101호	300000	
34	인천8나3106	남인조경(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21번지2층	300000	
35	인천80나6466	(주)매트로웰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현동 429번지 10호	300000	
36	인천31가3222	(주)성원창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14번지 7호	300000	
37	인천80더7309	(주)유진테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현동 산 19번지 4호	20000	
38	인천34다1277	한경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73번지 2호 30동 4반 401호	300000	
39	인천80리3307	(주)홍일안전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1번지 3호 14블럭13롯데	20000	
40	인천33가6335	임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24번지 1호 3동 3반 진성주택 303호	300000	
41	02나3461	조장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11번지 4호 1동 2반 삼일빌리지 301호	20000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6 - 27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이화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변경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06. 6. 23.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이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남동구 간석동 616-7번지
102,365.99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이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 전재만)
신동아 건설주식회사 (대표자 : 김진천)
 - 주소 :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6-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7-2 한풍상가
4. 사업시행기간 : 2004. 5 ~ 2007. 8월
5. 사업시행인가일 : 1999. 11. 30
6. 변경사유 및 내용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하수계획변경 배치	도로 후퇴에 따른 위치이동 및 신설
지하하부 PIT설치 및 지하주차장 슬래브변경	구조적 안전추가 확보
발코니 난간 높이변경	모델하우스설치내용과 동일하게 변경
평형별 PD, AD위치변경	모델하우스설치내용과 동일하게 변경
지붕마감변경 (갈라아스팔트싱글 ⇒ 금속기와잇기)	미관 향상